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원중, 김원태,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원형, 이종배,
이효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

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
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
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
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
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

제6조 ~ 제9조 (생략)

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문서번호

202302010000001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3.02.06.

회신일 : 2023.02.08.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 제2항 제 2호 자격요건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를 참고하여 인건비는 1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6조 제7항에 따라 적정 횟수의 자문 수당 산정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70,140천원(연평균 54,02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안 제6조 제4항 등)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소계(b)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총비용(b-a)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 서울브랜드총괄관 총 운영비 ≙ 270,14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4~2028) 비용의 합산 : 54,028천원(44,428천원 + 9,600천원) × 5년
- 연간 브랜드총괄관 인건비 = 1급 공무원 시간당 최대연봉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시간
= 57,849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4,428천원
- 연간 브랜드총괄관 수당 = 월 자문횟수 × 수당 × 12월 = 4회 × 200천원 × 12월
= 9,600천원

- ※ 연봉은 1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인 122,177천원(2023 지방공무원 업무 등 보수지침 p141)으로 산정.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평균 권고 시간(실제 근무시간과 다름)인 176시간으로 산정하여 도출한 2,112시간으로 나눈 57,849원(소수 5자리 이하 절사)을 시급으로 산정
- ※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운영 예정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담당자의 견해에따라 비상임 위촉직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을 참고하되,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6조 총괄건축가는 산하조직관련 조항을 염두에 둔 점 등 건축관련 업무에 비해 도시전체 브랜드관련 자문업무량이 적다는 담당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총괄건축가의 주4회 근무의 절반 수준인 주 2회 근무 가정(8시간*2일*4주*12개월)하여 산정
- ※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하고 월 4회 자문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
- ※ 기타 서울시 브랜드를 총괄차원에서 학술세미나, 공무국외여행 관련 비용은 서울총괄건축가와 동일하다고 가정

[참고] 2023년도 서울총괄건축가 사업비 내역(도시공간기획담당관): 총 128,470천원

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총괄건축가 수당	64,108원*8시간*4일*4주*12개월
	○ 학술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	5,000,000원*2회
	○ 민간인국외여비	10,000,000원*2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